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8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임직원의 결격사유 정비(안 제11조)

나.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을 구청장 ‘지정’에서 ‘선임’으로 변경(안 제33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의2(회계감사인의 선임 등),
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, 제66조(결산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7. 16.~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에 따른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,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회계감사 보고서

2.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<u>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</u> 2. <u>미성년자</u>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	제11조(임직원의 결격사유)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에 따른다.
제33조(결산) ① (생략)	제33조(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임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,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

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회계감사 보고서

2.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
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손연숙
연 락 처	02-3153-8532